

2021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공고[자격완화]

경상남도과 김해시에서는 청년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2021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자격완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 8. 23.

김 해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범사업)
- 사업비: 14,100천원 (도비 4,230천원, 시비 9,870천원)
- 사업량: 100가구 정도
- 사업기간: 2021. 7. 26.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2. 지원 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청년·신혼부부 임차인
 - **청년: 만 19세 ~ 만 39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 **신혼부부: 나이 무관, 혼인기간 7년 이내**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기간)
 - 김해시 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청년·신혼부부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일 기준: '19. 10월 ~ '21. 12월** (보증 갱신일 포함)
- * 미가입자는 가입 후 신청 가능
- * 보증기관별 보증료 가입조건이 상이하므로 해당기관 확인 후 가입한 자
- ※ 보증가입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위탁금융기관 (신한·국민·우리·NH농협·경남 등)

3. 지원제외 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자(신청일 기준)
- 법인사업자인 임차인
- 그 밖에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청 및 지원절차

- 신청기간: **2021. 7. 26.** ~ 예산소진 시까지, 09:00~18:00(단, 12:00~13:00 제외)
- 신청방법: 김해시 공동주택과 **방문 신청** (토요일, 공휴일 제외)
 -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행복민원청사 5층
 - * 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 신청·접수 불가
- 지원절차: 신청·접수(신청인→시)⇨대상자 결정(시)⇨통보·지급(시→신청인)
 - * **대상자 결정 결과는 개별문자 통보**
- 지급 일: 지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5. 선정기준

-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순차적 지원**
- 지원 신청금액이 같은 날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접수순으로 선정
-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지원 불가
- **2021년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혼자는 부부합산)**
 - '21년 1~3월까지 3개월 평균액 또는 '21년 3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 소득판정 기준표 [2021년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소득기준(원/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290,000	113,568	107,552	114,709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5인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6인	11,931,000	414,255	456,308	449,388
7인	13,495,000	486,115	531,814	540,144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가구원수: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수 기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로 확인)

-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관련
 -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맞벌이 가구일 경우 합산 산정)
 - 신청인 및 배우자 외 건강보험료 별도 합산하지 않음
 - 신청인이 미혼의 피부양자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에 의한 주택 소유여부 판정

-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과세연도 2020~2021년 전국 자치단체 기준 재산세(주택) 기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세무과에서 방문발급만 가능하므로 1인 방문 시 배우자의 위임장, 신분증, 도장 지참 필요

6. 신청서류

	신청서류	발행처
①	신청서 및 정보 제공동의서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공동주택과 비치
②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가입기관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④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020~2021년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세무과 (방문발급만 가능)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피부양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1년 1~3월 고지금액 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발급가능)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⑧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일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발급가능)
⑨	주민등록등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발급가능)

※ ⑥, ⑦ 관련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미혼	가입자	○	○	×	
	피부양자	○(부양자)	○(부양자)	○	
기혼	외벌이	가입자	○	×	
		피부양자	×	×	○
	맞벌이	가입자	○	○	×
		가입자	○	○	×

7. 기타사항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증료를 지원받은 경우 회수 조치합니다.
- 보증료를 지원 받은 자 중에서 연말정산 등에서 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소득판정을 위하여 신청 이후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저소득주거지원팀 (☎ 330-3919)

[별지 제1호서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남, 여)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택 현황	소재지			소유자	(남, 여)
	전세보증금			면적(m ²)	
	주택종류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	<input type="checkbox"/> 공동주택	계약기간	
지급계좌 (신청인 본인명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신청금액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위 동의 미체크시 신청인 제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확인서 1부 7.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8. 혼인관계증명서 1부.(기혼자) 	주민등록표 등본

